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7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김대식 · 김상훈
김종양 · 서천호 · 박형수
최보운 · 박충권 · 윤재욱
임이자 · 서일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·제도의 개선, 창작활동 활성화, 기술 개발 및 보급,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 중 “수립”을 “5년마다 수립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<u>수립·시행</u>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</p> <p>② .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년마다 수립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. ③ (현행과 같음)</p>